

의안번호	2219530
의 퇴 인	여기구 의원
회 답 일	2026.7.13.
추 계 번호	26F3079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철강 부원료 기본세율을 무세로 인하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로 하는 경우, 관세 수입은 2027년 12억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595억원(연평균 11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관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안 별표(철강 부원료)	-119	-119	-119	-119	-119	-595	-119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별표(철강 부원료)	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로 함	-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별표(철강 부원료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대한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이 2027.1.1.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며, 추계기간은 5년으로 설정함
- 최근 5개년도 관세 수입실적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대한 효과를 추계
 - 기본관세율 이외에 연도별·품목별로 적용된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최근 5개년(2021~2025년) 관세 수입 실적 평균을 바탕으로 추계

3. 재정수반 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세입실적

- 개정안은 총 16개 철강 부원료에 대해 기본관세율을 무세로 적용하려는 것임

[표 2] 개정안에 따라 무세로 변경되는 철강 부원료 현황

(단위: %)

연번	구분	HS CODE (10단위)	현행 기본관세율	개정안
1	석회석 용제(融劑),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(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) 1. 석회석	2521-00-1000	3	0
2	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 이하인 것 2. 기타	2529-21-9000	2	
3	코크스와 반성(半成) 코크스(석탄·갈탄·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,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), 레토르트 카본(retort carbon) 1. 코크스 가. 석탄에서 제조한 것	2704-00-1010	3	
4	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(paste)와 노(爐)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(paste)	3801-30-0000	8	
5	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	7202-21-0000	2	
6	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	7202-41-0000	2	
7	기타	7202-49-0000	2	
8	페로실리코크로뮴(ferro-silico-chromium)	7202-50-0000	2	
9	페로니켈(ferro-nickel)	7202-60-0000	3	
10	페로티타늄(ferrotitanium)과 페로실리코티타늄(ferro-silico-titanium)	7202-91-0000	3	
11	페로니오븀(ferro-niobium)	7202-93-0000	3	
12	기타	7202-99-9000	3	

연번	구분	HS CODE (10단위)	현행 기본관세율	개정안
	2. 기타			
13	합금하지 않은 니켈 2. 기타	7502-10-9000	3	
14	티타늄의 괴(塊), 가루 1. 괴(塊)	8108-20-1000	2	
15	망간과 그 제품 [웨이스트(waste)와 스크랩(scrap)을 포함한다]	8111-00-0000	2	
16	압연기용 롤 2. 단조제의 것	8455-30-2000	8	

□ 16개 철강 부원료 품목의 최근 5개년(2021~2025년) 관세 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연평균 119억원의 관세가 징수됨

[표 3] 최근 5개년 철강 부원료 관세 수입 실적

(단위: 백만원)

연번	구분	HS CODE (10단위)	2021	2022	2023	2024	2025	연평균
1	석회석 용제(融劑),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(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) 1. 석회석	2521-00-1000	1,277	1,433	1,208	1,160	1,109	1,237
2	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 이하인 것 2. 기타	2529-21-9000	312	202	194	254	256	244
3	코크스와 반성(半成) 코크스(석탄·갈탄·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,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), 레토르트 카본(retort carbon) 1. 코크스 가. 석탄에서 제조한 것	2704-00-1010	1	11	4	43	23	16
4	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(paste)와 노(爐)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(paste)	3801-30-0000	11	67	55	22	91	49
5	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	7202-21-0000	1	0.08	0.25	3,179	4	637
6	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	7202-41-0000	2,650	3,335	4	4,156	7,013	3,432
7	기타	7202-49-0000	533	1,801	0.01	863	775	794

연 번	구분	HS CODE (10단위)	2021	2022	2023	2024	2025	연평균
8	페로실리코크로뮴 (ferro-silico-chromium)	7202-50 -0000	201	15	-	156	222	149
9	페로니켈 (ferro-nickel)	7202-60 -0000	2	1,709	1,525	1,694	1,818	1,350
10	페로티타늄(ferrotitanium)과 페로실리코티타늄 (ferro-silico-titanium)	7202-91 -0000	179	690	0.1	144	151	233
11	페로니오븀 (ferro-niobium)	7202-93 -0000	1	0.3	1	3	5	2
12	기타 2. 기타	7202-99 -9000	18	23	22	27	54	29
13	합금하지 않은 니켈 2. 기타	7502-10 -9000	2,956	3,037	1	2	1,355	1,470
14	티타늄의 괴(塊), 가루 1. 괴(塊)	8108-20 -1000	388	501	19	7	0.2	183
15	망간과 그 제품 [웨이스트(waste)와 스크랩(scrap)을 포함한다]	8111-00 -0000	2,280	1,429	128	367	786	998
16	압연기용 롤 2. 단조제의 것	8455-30 -2000	2,102	1,515	1,453	130	61	1,052
합계			12,912	15,768	4,614	12,207	13,723	11,875

주: 정부는 매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예고 및 시행하고 있으며,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할당세율이 변동함
 자료: 관세청 제출자료

- 관세 징수시에는 「관세법」 제50조에 따른 관세율 적용순위에 따라 관세가 징수되며, 기본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FTA협정 등으로 인해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¹⁾

1) 「관세법」 제50조에 따른 관세율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음

구분	적용세율
1순위	덤핑방지관세(「관세법」 제51조), 상계관세(「관세법」 제57조), 보복관세(「관세법」 제63조), 긴급관세(「관세법」 제65조), 특정국물품 긴급관세(「관세법」 제67조의2),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(「관세법」 제68조), 조정관세(「관세법」 제69조)
2순위 ¹⁾	국제협력관세(「관세법」 제73조), 편익관세(「관세법」 제74조)
3순위	조정관세(「관세법」 제69조), 할당관세(「관세법」 제71조) ²⁾ , 계절관세(「관세법」 제72조)
4순위	일반특혜관세(「관세법」 제76조)
5순위	잠정관세율(「관세법」 제49조제1호)
6순위	기본관세율(「관세법」 제49조제2호)

주: 1. 2순위에 해당하는 관세율의 경우 3~6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하나,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의 경우 세율이 높은 경우에도 5~6순위보다 우선하여 적용

2. 할당관세는 4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

- 또한, 해당 품목에 대해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관세 수입실적이 적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, 철강 부원료의 경우 매해 품목 및 관세율은 상이하나 할당관세가 적용됨

[표 4] 연도별 철강부원료 할당관세 운용에 따른 관세율

(단위: %)

구분 세율	2021		2022		2023		2024		2025	
	기본	할당	기본	할당	기본	할당	기본	할당	기본	할당
탄소전극	5	0	5	1	—	—	—	—	—	—
귀금속 잔재물	2	1	2	0	2	0	2	0	2	0
코크스	3	0	3	0	3	0	—	—	—	—
페이스트	8	0	8	1	8	1	8	0	—	—
페로크롬 ¹⁾	2	0.5	2	1	2	0	2	1	—	—
페로니켈	3	0	3	1	3	1	3	1	—	—
페로티타늄	—	—	—	—	3	0	—	—	—	—
페로니오븀	3	0	3	0	3	0	3	0	3	0
니켈괴	3	1	3	1	3	0	3	0	—	—
티타늄괴	2	0.5	2	0.5	2	0	2	0	2	0
단조압연롤	—	—	—	—	—	—	8	0	8	0

주: 1)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(7202-41-0000)은 주로 고탄소 페로크롬을 의미

자료: 연도별 탄력관세 운용계획(기획재정부)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

(3) 추계방법

- 개정안에 대한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이 2027.1.1.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며, 추계기간은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으로 설정함
- 최근 5개년도(2021~2025년) 관세 세입실적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대한 효과를 추계
 - 정부는 매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예고 및 시행하고 있으며,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할당세율이 변동하여 연도별·품목별로 적용된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본세율이 0%가 될 경우의 세수효과를 추계함
 - 탄력관세의 경우 매해 말에 계획이 발표되어 이를 예측할 수 없음

(4) 추계결과

-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로 하는 경우, 관세는 2027년 12억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595억원(연평균 119억원) 감

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철강 부원료 기본세율 무세 적용에 따른 세수효과: 관세,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세목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관세	-119	-119	-119	-119	-119	-595	-119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김주현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주현	02-6788-4836	kjh@assembly.go.kr